



##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및 운영 지침」 개정 알림

---

1. 관련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351('19.1.18.)호 및 -8336(`21.8.10.)호
2. 우리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점소독시설 운영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및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동 지침에 따라 지정을 희망하는 민간 축산시설에 대한 절차 진행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정된 시설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및 운영 지침(시행용) 1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구제역진단과장), 농촌진흥청장(재해대응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가축질병방역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농협중앙회장(축산경제대표), (사)전국한우협회, (사)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단법인 한국사슴협회장, 사단법인 염소협회장

주무관 **최운영** 사무관 **김화태** 조류인플루엔자 전결 2021. 8. 10.  
지방역과장 **홍기성**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1. 8. 10.) 접수  
8359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3 팩스번호 044-863-9210 / [ychoi82@korea.kr](mailto:ychoi82@korea.kr) / 비공개(5)